

2020년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10. 12.(월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7건(안건번호 제2020-132000호~제2020-132069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◇◇◇◇ 사이트의 음악 (가수 방탄소년단 등) 게시물 은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B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음악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, 예컨대 대중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(음악) Dynamite (가수 : 방탄소년단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음악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조치의 권고에 대해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- C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32000호~132069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"시정권고" 의견임. 단, 기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"경고의 시정권고" 의견임.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32000호~132069호<‘◇◇◇◇ 사이트의’(음악) Dynamite(가수: 방탄소년단) 등 97건의 게시물>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

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2020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10. 12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